

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(가입)에 대한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6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임
- 나.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광역·기초 지자체 간 자치분권 관련 공동 의제 발굴·논의, 공동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(의결)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명 :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

나. 기 능(안 제2조)

- 1)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
- 2)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3)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4)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5)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

다. 구 성 (안 제3조)

- 1) 참여 지방자치단체 : 별표 참고

라. 임 원 (안 제4조)

- 1) 협의회는 회장 1인, 부회장(복수), 사무총장으로 구성

마. 회의 및 의결 (안 제6조)

- 1)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장이 됨
- 2)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
- 3)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바. 경비부담(안 제12조)

- 1)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
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

사. 회계보고 및 결산(안 제13조)

- 1)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함
- 2)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
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 제152조~제158조
- 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~제101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예산편성 요구(연간 광역 지자체 50백만원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)에 가입(부담금 5천만원)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‘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(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).

나. ‘협의회’의 구성

- 협의회는 29개의 기초 지방정부가 연대해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. 1. 22. 창립되어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공동 연구, 지역사회와 학계와의 교류협력, ‘자치분권 대학’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〉

서울(7)	경기(10)	인천(3)	대전(2)	충남(2)	전북(1)	전남(2)	광주(2)
성북, 도봉, 노원, 은평, 금천, 강동, 서대문	수원, 성남, 안양, 부천, 광명, 안산, 오산, 시흥, 김포, 양평	남구, 부평구, 계양구	서구, 유성구	논산시, 아산시	완주군	영암군, 여수시	서구, 광산구

- 또한, 운영세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5천만원(기초자치단체는 1천만원)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, 자치분권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과 사무처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음.

다. 협의회 가입의 적정성

- 서울시는 그 동안 정부와는 ‘중앙과 지방 정책협의회’ 등을 통해 타 시도와는 ‘시도지사협의회’ 등을 매개로 자치분권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왔음.
- 그러나 타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와는 간헐적인 MOU(양해각서) 체결 외에는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.
- 이에 서울시는 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,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개발,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

통한 공동 조사·연구·분석 등 ‘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’ 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음.

- 현재 협의회 구성을 보면 서울지역은 7곳(성북, 도봉, 노원, 은평, 금천, 강동, 서대문), 경기지역은 10곳 등 모두가 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가 가입하게 되면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됨.
- 그러나 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.
- 한편, 서울시는 지난 8월 회장으로 선출된 ‘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’와 수도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, 서울시와 자치구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음.
- 또한,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(2018.10.30)에 따르면, 대통령과 국무총리, 시·도지사,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으로 구성된 (가칭)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정책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임.

- 이처럼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된 협의회에 별도로 가입을 추진하고자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지 않음.

라. 종합의견

- 자치분권분야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로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,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 가입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서울시는 이미 여러 협의회 채널을 통해 중앙과 지방, 지방간 정책협의를 교류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된 협의회에 추가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.
- 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회가 추가 필요하다면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·운영 중인 시·도지사협의회, 시·도의회의장협의회, 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,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연석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참고자료1 「지방자치법」 행정협의회 부분 발췌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참고자료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

(개정)2017.3.31.

(제정)2016.7.22.

제1조(사무처)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. 사무처의 위치는 국회 소재 도시에 둔다.

제2조(사무처의 사무) 협의회의 사무는 회장 시에서 관장하며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정책 입안
2.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자료수집
3. 공동협력사업 추진
4.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
5.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·회계 관리
6.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

제3조(사무처 조직) ① 사무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을 두며,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처장 및 직원을 유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④ 사무처는 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,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제4조(경비부담) 공동사업 추진과 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원 지방정부가 1천만원씩(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5천만원) 부담한다.

제5조(감사) ① 협의회 사무와 회계 제반사항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감사를 둔다.

② 감사는 협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③ 감사는 제반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3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회원 지방정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